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2024.4.26.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고자 4월 27일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과 연차별 추진계획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의 경우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한데, 기존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여러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여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지구 지정 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에着手할 계획이다.

| 주민들의 신속한 정비 요구  | 정부의 도시 재창조 목표  |
|---|--|
| 배관부식·충간소음·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br>정주인구 대비 부족한 도시서비스<br>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도시경제구조 | 주차난, 기반시설 노후화 등 도시문제 해결<br>스마트시티, 미래모빌리티 등 도시기능 향상<br>주거·업무·상업 복합화 등 자족기능 강화 |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특별법 마련 필요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향

출처: 국토교통부. (2024).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4월 26일 보도자료.